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 토 보 고

### I. 주요내용

-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등 외에는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함(안 제20조의5제1항).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제2항·제3항).
-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에 관한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함(안 제20조의6제4호).
-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0조의7).

## II. 검토의견

### 1.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안 제20조의5제1항)

안 제20조의5제1항에서는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i)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인 경우(제1호) 또는 ii)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제2호)에는 예외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허용되는 요건으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할 것을 규정한 제2호와 달리 제1호의 경우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로만 규정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의 허용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교육현장에서 관련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가능한 요건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제2호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로 규정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각 행위의 성격에 차이가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의 호를 신설하여 분리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개 정 안                                                                                                                  | 수정의견                                                                                                                                                              |
|------------------------------------------------------------------------------------------------------------------------|-------------------------------------------------------------------------------------------------------------------------------------------------------------------|
|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등) ①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u>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u> |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u> |
|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 2.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                                                                                                                        |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이 은 정)